의안번호	2219136
의 뢰 인	고동진의원
회 답 일	2026.8.27.
추계번호	26D2756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선거일의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 인쇄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4억 1,900만원, 2032년 4억 5,1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41억원(연평균 8억 2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선·지선)	2031	2032 (국선)	합계	연평균
투표용지 인쇄율 상향 (안 제151조의2)	419	-	3,230	-	451	4,100	820

주: 1. 투표용지 인쇄율 상향(안 제151조의2)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2. 개정안에서 선거인 수 대비 투표용지 인쇄율을 70~100%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하한선인 70%로 가정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1조의2 (투표용지의 인쇄 및 송부)	선거일의 투표용지는 각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원활한 투표 보장과 투표용지의 예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인쇄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인쇄매수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151조의2 (투표용지의 인쇄 및 송부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은 선거일의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70%에서 100%의 범위에서 인쇄하도록 의무화하여 현행 절차사무편람 또는 인쇄실적 대비 인쇄매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재정소요 발생

○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「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」은 선거인 수 대비 인쇄율을 국회의원·대통령선거 60%, 지방선거 50%를 기준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음

○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「진상규명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」(2026.6.19.)에 따르면,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60%였으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인쇄비율을 50% 적용한 것으로 확인

❑ 본 추계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인쇄율을 절차사무편람의 하한선(국회의원·대통령선거 60%, 지방선거 50%)으로 보고, 개정안에 따른 인쇄율은 70%로 가정하여 그 차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
○ 사전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작성·교부되므로 개정안에 따른 인쇄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추계에서 제외함

❑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 시 선거일의 투표용지 인쇄매수가 증가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며 보궐선거는 제외

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[1)]

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과 법률안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❑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선거일의 투표용지 인쇄율이 현행 하한 기준(60% 또는 50%)에서 70%로 상향됨에 따라 증가하는 인쇄 비용

❑ 본 추계에서는 선거인 수, 선거인 1명당 투표용지 수량, 개정안에 따른 인쇄율 증분, 투표용지 인쇄단가를 곱하여 산출

○ **(선거인 수)** 공직선거가 있는 해인 2028년 45,528,657명, 2030년 45,819,545명, 2032년 46,012,371명

-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(2022~2072, 2023년 12월 발표)에 근거하여 18세 이상 인구 수를 합한 값

○ **(선거인 1명당 투표용지)** 2028년 및 2032년 국회의원선거 각 2매, 2030년 대통령선거 1매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7매

○ **(인쇄율 증분)** 2028년 및 2032년 국회의원선거 10%p, 2030년 대통령선거 10%p, 전국동시지방선거 20%p

-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「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」은 선거인 수 대비 인쇄율을 국회의원·대통령선거 60%, 지방선거 50%[2)]를 기준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음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6.3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%	2.3%	2.1%	2.3%	2.0%	2.0%	2.0%

2)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, 「진상규명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」(2026.6.19.) 참조.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는 지방선거에도 60%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제9회부터 50%로 인하함

○ **(인쇄단가)**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단가 42원은 202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참고하여 추정하였고,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
[표 2] 투표용지 인쇄단가 추정: 2028~2032년

(단위: 원)

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선·지선)	2031	2032 (국선)
투표용지 인쇄단가	46	47	47	48	4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❑ 추계결과, 선거일의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 인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4억 1,900만원, 2032년 4억 5,1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41억원으로 추계됨

[표 3] 투표용지 인쇄율 상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: 2028~2032년

구분	2028 (국선)	2029	2030		2031	2032 (국선)	합계
			대선	지선			
선거인 수(a, 명)	45,528,657	–	45,819,545		–	46,012,371	–
선거인 1명당 투표용지(b, 매)	2	–	1	7	–	2	–
인쇄율 증분(c)	10%p	–	10%p	20%p	–	10%p	–
투표용지 인쇄단가(d, 원)	46	–	47		–	49	–
추가재정소요 (=a×b×c×d, 백만원)	419	–	215	3,015	–	451	4,1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본 추계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상 현행 인쇄 하한기준과 최근 공직선거의 투표용지 인쇄 관련 예산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